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66호
2024. 4. 2.(화)



목 차

◆ 공 고

제2024-1067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2
-----------------------------------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067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조례안 (15건)	1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	서울특별시 학술융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4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5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7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8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실 · 본부 · 국
	9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인력개발과)
	10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국 (재무과)
	11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국 (세제과)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1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본부 (박물관과)
	1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동의안 (5건)	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국 (재산관리과)
	2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3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4	남산 곤돌라 관리 · 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노들섬 다목적휴 숲) 사용료 감면 동의안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실 · 본부 · 국
의견 청취안 (3건)	1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2	2030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3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안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시정 기조를 반영하여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민관예산협의회 등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참여예산위원 자격요건 완화(안 제13조)

나.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 개편

-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7~18조)
- 운영실적이 저조한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지원협의회 등을 폐지

다.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심사기준 개정(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1. 25. ~ 2. 14.)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배소희 (☎2133-688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 예산의” 를 “서울특별시 예산의” 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시와” 를 “시와” 로 한다.

제4조 중 “시민참여” 를 “있어서 시민참여” 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시민들” 을 “시민” 으로 한다.

제6조 중 “시민의견” 을 “있어서 시민의견” 으로 한다.

제7조 중 “시의 예산 편성 등” 을 “예산과정”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 를 “시 누리집” 으로 한다.

제9조 중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을 “예산과정” 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로 한다.

제10조 중 “시의 예산 편성 등” 을 “예산과정” 으로, “자는” 을 “시민은” 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터넷 홈페이지” 를 “시 누리집” 으로 한다.

제12조 중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을 “수행하여” 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 을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 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 로, “대한 최종” 을 “대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위원” 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를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위원장 및 간사)” 를 “(위원장 등의 직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

원장은 위원회”를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선출하고, 임기 동안”을 “위원회를 대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는 제18조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겸임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회하고”를 “개회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총회”를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로, “시민”을 “위원이 아닌 시민”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람이”를 “시민 및 전문가”로, “경우 절차에 따라”를 “경우”로, “하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견은”을 “의견을”로 한다.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안의 최종적인 심의·조정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총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제2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18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중전의 제1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기능분과의 자율적 운영

제20조(중전의 제22조의2)제1호 중 “시 전체”를 “사회적 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규”를 “신규편성”으로, “사업”을 “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 위주의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피할”을 “회피할”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9조) 중 “규정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0조)제1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4장(제23조 및 제24조)을 삭제하고,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민에게”를 “시민 또는 단체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종류·액수는”을 “포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를 “포상금 등의 종류 및 액수를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 전문가 등이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앞에 “제5장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를 삭제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원 등

제28조 앞에 “제6장 지원 등” 을 삭제한다.

제25조(중전의 제29조) 중 “조례시행” 을 “조례 시행”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u>시 예산의</u>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서울특별시</u> <u>예산의</u> ----- ----- -----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서울시</u> 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와</u> ----- ----- ----- -----.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u>시민참여</u>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	제4조(법령준수 의무) ----- ----- ----- ----- ----- <u>있어서 시민참여</u> ----- ----- -----

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 과정에 시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 편성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의견수렴 절차)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 편성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

-----.

제5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민-----
-----.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
----- 있어서 시민의견 -----
-----.

제7조(시민의 권리) -----
----- 예산과정-----
-----.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 시 누리집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견수렴 절차) ----- 예산과정-----

-----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
-----.

제10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시민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
· 교육 · 홍보 및 토론허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
· 집행 · 결산 등 예산과정과 시민참여방법,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민관 예산협의회에서 심의 · 조정한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3. ~ 5.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 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시민은 -----

-----.

제11조(결과 공개) -----

----- 시 누리집 -----
-----.

제12조(정보제공) -----

----- 수행하여 -----

-----.

제13조(시민참여위원회 구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 대한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천 방식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3. (생략)

⑤ (생략)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의회 및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선출하고, 임기 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④ -----

-----.

1. -----
-----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

2.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

② ----- 위원회를 대표하고,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③ (생 략)

<신 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별 자율적 운영 유도

<신 설>

4. 5. (생 략)

6. (생 략)

제17조(총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는 제18조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겸임한다.

제19조(운영원칙)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5.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기능분과의 자율적 운영

3. 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16조(총회)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안의 최종적인 심의·조정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총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과정에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 절차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시장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은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한다.

제18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기능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기능분과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9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

② -----
----- 개회하고-----
-----.

③ -----
-----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
-- 위원이 아닌 시민 -----
-----, <후단 삭제>

④ ----- 시민 및 전문가
가 ----- 경우 -----

-- 한다.

⑤ -----
----- 의견을 -----

--.
<삭 제>

제21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제21조 (생략)

제22조(민관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과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본부·국별로 민관예산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민관협의회의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특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의의 회장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

----- 누리집을 -----
-----.

제22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
----- 15일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하
되,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
민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회장은 공무원
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소집하고, 민관협의
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⑤ 민관협의회의 회장은 민관협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⑥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제22조의2(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
한 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
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
업을 우선한다.
2. (생 략)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기준) -----

-----.

1. 사회적 약자-----
-----.
2. (현행과 같음)
3. -----

신규편성 -----
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 위주
의 사업-----.

4. (생 략)

5.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4장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23조(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각 자치구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협치회의를 포함한다)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시민제안사업을 심의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8월 초까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제25조(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4. (현행과 같음)

5. -----
-- 회피할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위원회, 협의회 운영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4.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지원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50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담당 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협의회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업무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협의회 부회장은 협의회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 회장은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최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4.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5.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 그 밖의 협의회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6장 지원 등

<신 설>

제2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 민관 협의회 등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삭 제>

제4장 지원 등

제2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 전문가 등이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종류·액수는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선정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생략)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민 또는 단체에

-----.

⑤ ----- 포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 -----

--- 포상금 등의 종류 및 액수
를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시행규칙) -- 조례 시행--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당해 의안은 시민참여예산제 심사기준, 위원회 교육이수요건, 운영기구 등을 조정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배소희 (02-2133-6887)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촉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각 시도에 개정 권고
- 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의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체계 정비

2. 주요내용

- 가. 위촉위원 성별 고려(안 제4조)
 - －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
- 나. 위촉위원 비율 규정(안 제9조제3항)
 - － 위촉직 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규정
- 다.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3조~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에 따라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11. 16. ~ 12. 6.)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신희진 (☎2133-782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3조의2를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제10조로 하며,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8조를 제5조로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4조의2를 제17조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기능)”을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중 “시장 또는”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중전의 제3조)의 제목 “(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사람 중에서”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의회 의장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3항) 중 “위원장”을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회의는” 을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 회의” 를 “회의” 로, “제3조제2항” 을 “제4조” 로, “구성한다” 를 “구성하되, 위촉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 회의” 를 “회의”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전의 제6조)제6항 중 “심의회 회의” 를 “회의의” 로, “된다” 를 “각각 맡는다” 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제2항 중 “안전” 을 “의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외한다” 를 “예외로 한다” 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 중 “공무원이나 전문가,” 를 “공무원, 전문가” 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3항 중 “홈페이지” 를 “누리집” 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3항” 을 “제14조제3항” 으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5조)제2항 중 “의회에” 를 “시의회에” 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6조) 중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을 “회의에 참석하는”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 ①</u> <u>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u> <u>학술용역의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u> <u>관리·감독 등을 위하여</u> <u>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u> <u>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1. (생략) 2. 외부위원 : <u>시의회 의장이</u>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지정 각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중 50명 이내로 구성 3. (생략) <u>제3조의2 (생략)</u> <u>제4조(기능) <신설></u>	<u>제4조(구성) <삭제></u> -----<u>사람</u> <u>중에서</u>----- -- <u>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u> <u>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u> <u>여야 한다.</u> 1. (현행과 같음) 2. -----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u> ----- ----- ----- ----- 3. (현행과 같음) <u>제7조 (현행 제3조의2와 같음)</u> <u>제3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u> <u>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각</u> <u>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u> <u>의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u> <u>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u>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학술용역사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생략)

<신설>

제6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생략)
- ③ 심의회 회의는 심의 안건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내부위원 전원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심의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

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
-----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
는 심의회의 -----

제10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
-----,

- ② (현행과 같음)
- ③ 회의-----
----- 제4조-----

---- 구성하되, 위촉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④ 회의-----

해서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회의
에 부칠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생 략)

⑥ 심의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
명을 두되, 간사는 시 창의행정
담당관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
사무관이, 서기는 학술용역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장)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
다.

제8조(임기)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
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의의-----

----- 각각 말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②·③ (현
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① 심의회 의 위원장(이하 “위원
장”이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①·② (현행
과 같음)

<삭 제>

④ (생 략)

제9조(의안제출) ① (생 략)

② 제1항의 의안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 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 심사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의안 제출 시 주관 부서에서는 학술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학술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의안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의안 -----

-----.

③ -----

----- 예외로 한다.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3조(의견청취 등) -----

----- 공무원, 전문가 -----

견을 청취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점검 및 평가) ①·② (생략)

③ 심의회는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생략)

제14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심의회는 학술용역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의 종합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2.·3. (생략)

② (생략)

제14조의2 (생략)

제15조(회의록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회의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점검 및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누리집 -----

---.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6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

1. 제14조제3항-----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현행 제14조의2와 같음)

제18조(회의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의회에 -----

-----.

제16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 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 ----- ----- ----- -----.
--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동 개정안은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동 개정안은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부서명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신희진 주무관(2133-7829)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종료 및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이전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여성공예센터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제2호, 제6조, 제18조제1항제2호, 별표2, 별표7)

나.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주소 변경(안 별표3).

다. 이용료 반환 규정 구체화(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2. 8.~2. 2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김나리(☎2133-501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6호까지 및 제1의2호”를 “제6호까지”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의2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의2호”를 “제4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취소에 관하여”를 “취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2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하거나 줄일”을 “감경하거나 면제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제1항제1의2호”를 “제18조제1항제2호”로, “면제하거나 줄일”을 “감경하거나 면제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줄인다”를 각각 “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하거나 줄일”을 “감경하거나 면제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줄인다”를 각각 “줄임”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23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를 “제7호까지”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여성관련시설”을 “필요한 경우 여성관련시설”로, “관하여 필요한 경우”를 “대하여”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7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여성능력개발원 명칭 및 위치(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동작구 노량진로 10(대방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 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1의2. (생략)</u>	<u>2. (현행 제1호의2와 같음)</u>
<u>2. 여성공예센터 :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 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 는 시설</u>	<u><삭 제></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 지 및 제1의2호와 유사한 시 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시설	7. ----- 제6호까지 ----- ----- ----- -----
제5조의2(서울가족플라자의 기능)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서울가 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서울가족플라자의 기능) 제 4조제2호-----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 능 등)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u><삭 제></u>

현행	개정안
<u>② 여성공예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여성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여성공예 창업공간 지원</u> <u>2. 입주 여성공예인의 창업(성장)지원사업 추진</u> <u>3. 공예분야 생활 창작 및 시민 참여활성화사업 추진</u> <u>4.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u> <u>5. 그 밖에 여성공예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u> 제10조(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 ①·② (생략) ③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의 <u>취소</u>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제48조 및 영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2조(관계법령의 적용) 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0조(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취소</u> ----- ----- ----- -----. 제12조(관계법령의 적용) ① ----- ----- ----- -- 「<u>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u>」 -----

현행	개정안
시설로 본다. ② (생략)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 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생략) <u>1의2. (생략)</u> <u>2. 여성공예센터 : 별표 7의 범 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u> 3. ~ 5. (생략) ② (생략)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 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이용료 를 <u>면제하거나 줄일</u> 수 있다. 1. · 2. (생략) ② 시장은 <u>제18조제1항제1의2 호의</u>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울가족 플라자의 이용료를 <u>면제하거나</u>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u>2. (현행 제1호의2와 같음)</u> <u><삭 제></u>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 ----- ----- ----- -- <u>감정하거나 면제할</u> ---. 1. · 2. (현행과 같음) ② ----- <u>제18조제1항제2호</u> -- ----- ----- ----- <u>감정하거나</u>

현행	개정안
줄일 수 있다. 다만, 창업공간은 제외한다. 1. 양육자의 일·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u>줄인다</u>. 2.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u>줄인다</u>. ③ 시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u>면제하거나 줄일</u> 수 있다.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료 각각 면제.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100분의 50을 <u>줄인다</u>.	<u>면제할</u> ---, ----- -----. 1. ----- ----- ----- ----- <u>줄임</u>. 2. ----- ----- ----- ----- ----- <u>줄임</u>. ③ ----- ----- ----- ----- ----- <u>감경하거나 면제할</u> ---. 1. ----- ----- ----- ----- ----- ----- <u>줄임</u>.

현행	개정안
2. (생략) 3. 그 밖에 교육과정의 이용률, 교육운영시간,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제21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u>이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u> <신설> <신설> <신설> 제23조(조직구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장 및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 등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규칙으로 정한다.	2. (현행과 같음) 3. ----- ----- ----- ----- ----- 줄임. 제21조(이용료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납부한 <u>이용료</u>----- --. 1. <u>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u> 3. <u>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u> 제23조(조직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필요한</u> ----- -----.

현행	개정안
제24조(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필요한</u> ----- -----.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u>제7호까지</u>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 <u>제7호까지</u> ----- ----- ----- -----.
제26조(관리·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정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u>관하여 필요한</u>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관리·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 ----- ----- ----- ----- ----- <u>필요한</u> ----- ----- -----.
제2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u>여성관련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u>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7조(지도·감독) ① ---- <u>필요한 경우 여성관련시설</u> -- <u>대하여</u> -----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여성공예센터 폐지 및 여성능력개발원 이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김나리 주무관(02-2133-5019)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남부, 북부) 통합 운영에 따라 교육원 명칭을 변경하고, 남부기술교육원 운영 중단(2026. 3. 1.부터)에 따라 운영기간을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에 따라 각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안 제5조, 별표)

나. 문구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제5조 제2항과 관련, 우선 입학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직업교육 훈련생 선발시 가점(5점)을 부여하고 있어 미반영함

(가점 대상 : 외국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장애인 및 중장년 전직 특화교육과정 50+캠퍼스 수료자)

※ 제11조 제1항과 관련,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고려에 대한 제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려하고 있으므로 미반영함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관리가 가능한 사업)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2. 15. ~ 3. 6.) 결과: 의견있음(미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조근희(☎2133-546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중 시장은”을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중부·남부기술교육원”을 “기술교육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1항”으로,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해”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3호 및 별표 개정 규정은 2025. 3. 1.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캠퍼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81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는 2026. 2. 28.까지만 운영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입학자격 등) ① (생략)	제5조(입학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중에서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 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 할 수 있다.	③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경기도에서 위탁하는 교육훈 련생. 단, 이 경우에 위탁교육 은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 술교육원 남부캠퍼스에서 시 행한다.	3. ----- --. 다만----- ----- 기술교육원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생략)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 ----- 규칙-----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	④ -----

육훈련생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하여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교육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직업교육훈련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직업훈련에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 4. (생략)

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 범위-----

-----.

-----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 중-----

-----.

1. -----

----- 사람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한 차례만-----

-----.

[별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명칭	위치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캠퍼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길 70가 81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81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는 2026. 2. 28.까지만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남부기술교육원을 서울 지역 기술교육원으로 분산 이전하는 사항으로, 자원 이전 및 운영시스템 통합 등이 수반되어야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남부기술교육원의 분산 이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조근희(☎02-2133-5463)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서울 경제상황 진단 방법을 현실화하고, 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세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기경보지수”를 삭제하고 “정량·정성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 나. 위기 상황별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 다. “경제위기대책본부”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 단계별 대응 주체 세분화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조례안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각 호에 대응하는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함)
 - (일부수용) 제5조제1항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전반에 관한 포괄적 조항으로 구체적 특성을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제6조(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에 반영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2. 15. ~ 3. 6.)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김혜선 (☎ 2133-522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이란 조기 경보지수 외의”를 “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작성·배포”를 “성별, 연령 등 시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배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30명”을 “20명”으로, “구성한다”를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명하거나”를 “임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맡는다.

제11조제2항 중 “반기별 1회씩 개최하되,”를 “경제상황 모니터링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거나”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경우에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시 해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6항 중 “담당 과장이 된다”를 “담당사무관이 맡는다”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이상징후가 경제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제2호의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대응시책에 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조기경보지수”란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를 종합·분석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4. “모니터링”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분석 및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3. -----이란 ----- ----- ----- ----- --.
제5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1.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2. ~ 5. (생략) ②·③ (생략)	제5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 ----- -----. <삭제>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 ① 시장은 경제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	제6조(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 ① ----- -----

계별 대응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8조(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내의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 성별, 연령 등 시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배포-----.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20명 -----
---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말고,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맡는다.

③ -----
----- 임명 또는 ----- . <후단 삭제>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
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
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씩 개최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
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④·⑤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
과 같음)

② ----- 경제상황 모
니터링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
거나 -----
---- 경우에 소집하고, 소집 사
유 종료 시 해산한다.

③ (현행과 같음)

(4) -----
----- 15일 -----

----- .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
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 설>

제13조 · 제14조 (생 략)

⑥ -----

-----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제13조(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이상징후가 경제
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
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위기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은 제5조제1항제2호의 단계
별 대응매뉴얼 및 대응시책에
규정한다.

제14조 · 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조기경보시스템 삭제”, “경제상황점검위원회 비상설화” 등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사안이기에 부수 비용이 미발생

4. 작성자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김혜선(02-2133-5220)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별표 내용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의 종류는 조례로 정하고 각 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2. 15. ~ 3. 6.) 결과: 불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장은주(☎ 2133-411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을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청소년시설 사용 또는 이용””을 ““청소년시설의 사용””으로, “쓰는”을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텔 등
2. 청소년복지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4. 기타 청소년시설: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② 제1항 각 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설이용자”를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을 “청소년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시설의 사용 등)”을 “(청소년시설의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외의”를 “외”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사용료””를 ““사용료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를 “시장은 사용료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을 “사용료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별표 1의 시설 중”을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으로,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을 “100분의 10 감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별표 1의 시설”을 “청소년시설”로,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을 “100분의 50 감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별표 1의 시

설”을 “청소년시설”로,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을 “100분의 50 감경”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사용료를 납부”를 “사용료등을 납부”로, “사용료를 반환”을 “사용료등을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등”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별표 1의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을 “(청소년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각각 “운영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를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의 사업 등)”을 “(시설협회의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 ----- ----- 「 <u>청소년 기본법</u> 」, 「 <u>청소년활동 진흥법</u> 」, 「 <u>청소년복지 지원법</u> 」, 「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 및 「 <u>지방자치법</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 <u>청소년시설 사용 또는 이용</u> "이라 함은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설비), 강습 등 일체의 서비스를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을 말한다.	4. " <u>청소년시설의 사용</u> "----- ----- ----- ----- <u>이용</u> 하는 -----.
제4조(설치) 이 조례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설치) ① 이 조례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청소년활동시설</u>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 2. <u>청소년복지지원시설</u> : 청소년

<신 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
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
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시설
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제6조(시설의 사용 등) ① 청소년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상담복지센터 등

3.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4. 기타 청소년시설: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청소년성문화

센터 등

② 제1항 각 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

-----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
-----.

제2장 청소년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6조(청소년시설의 사용 등) ①
사용자-----
-----.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③ (생략)

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
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
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
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사용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
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략)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
0분의 10 감면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
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 월 사용료의 100
분의 50 감면

2. ---- 외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등) ① -----
----- 범위 -----
----- "-----
사용료등"-----
-----.
----- 시장은 사용료등-----

-----.

② -----

--- 사용료등을 -----.

1. ~ 6. (현행과 같음)

7. -----
--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 100분의 10
감경

8. -----

----- 청소년시설-----
----- 100분의 50 감
경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이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 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
례」를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

9. -----

----- 청소년시설 -----

----- 100분의 50 감면 -----

③ ----- 사용
료를 납부 -----

----- 사용료를 반환 -----.

④ 사용료등 -----

----- 「서울특별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
례」 -----.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청소년시설 -----

-----.

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

제15조(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의 사업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 범위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청소년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

----- 범위 -----
-----.

② 운영자 -----

-----.

③ 운영자 -----

-----.

제4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

제15조(시설협회의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범위 -----

-----.

③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표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소재구	시설명	기능	위치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	"	고산자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용마산로 217
	"	시립양정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승림길 16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19로 74
	도봉구	시립도봉청소년센터	"	노혜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센터	"	백관산로4길 16
1. 청소년 활동 시설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양천청소년센터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강서청소년센터	"	금문대로577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금하로30길 64
	영등포구	시립영등포청소년센터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동작청소년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	"	강평로14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	"	아리수로83길 47
	② 청소년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 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 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재활 지원	영신로 200

	동작구	시립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주말활동 지원	여의대방로2길 33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재활 지원	통일로 684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재활 지원	노원로 16길 16
	양천구	시립양천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음악·문화활동 지원	신정동 1280-6외 4
③ 유스호스텔				
2. 청소년 복지 시설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의 제공 및 교류활동	퇴계로28가길 6
	영등포구	시립영등포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봉은사로 114길 43
	"	시립금천청소년종합상담센터(여)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관악청소년단기쉼터(남)	"	신림로 376
	"	시립관악청소년종합상담센터(남)	"	남곡로24가길 54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단기쉼터(여)	"	송림길 136
	용산구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	민리재로 156-1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	강북지역(이동형차량)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	강남지역(이동형차량)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종합상담센터(여)	"	통일로 92길 37-6
	도봉구	시립도봉청소년자립지원관	"	도당로 173/34 외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위기(가정 밖)청소년 지원 및 예방교육	한천로 140길 5-24
	중구	시립중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광진구	시립광진인턴십종합상담센터	청소년인턴십종합 예방 및 상담	구천역로 2
	동작구	시립마포인턴십종합상담센터	"	여의대방로2길 33
	마포구	시립마포인턴십종합상담센터	청소년인턴십종합 예방 및 상담	월드캠프로 212
	강북구	시립강북인턴십종합상담센터	"	삼선로 188/88외 4동
	도봉구	시립도봉인턴십종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강서구	시립강서인턴십종합상담센터	"	우정산로 117
3. 기타 청소년 시설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 관련 교육	구천역로 2
	도봉구	시립도봉청소년문화센터	"	노해로69길 132
	영등포구	시립영등포청소년문화센터	"	영신로 200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문화센터	"	면목로 23길 20
	동작구	시립동작청소년문화센터	"	여의대방로 28길 33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문화센터	"	통일로 684
	강남구	시립강남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청소년 상담센터(꿈터 등 포함)	봉은사로114길 4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제5조제2항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7개소) 시립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센터 (6개소)	○ 제2조(정의) 제1호 설치 근거법령에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 반영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근거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 매체 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 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 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조(정의) : 일부 반영 - (반 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미반영)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중독예 방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령으로 삼기에는 어 려움이 있음 ▶ 일부개정조례안에 기 반영된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 시설)을 근거로 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제4조(설치) 제1항 제4호 - 「청소년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청소년시설을 ‘활 동·복지·보호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 ‘기타 청소년시설’로 정하고 있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 터 및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청소년보호시설’로 분류	○ 제4조(설치) : 미반영 -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설치)에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기 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임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시설은 청소년 보호·재활 센터로 정하고 있음 ※ 청소년 보호시설과 유사한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 원법」상 청소년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설치목적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인터넷·게임중독, 과몰입 등의 예 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과 성범죄 예방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시설 운영 청소년 보호·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대구청소년 디딤센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청소년시설의 신설·변경·폐지 등 현황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장은주(2133-4131)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규정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20조제3항제2호)

나.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조문 구체화 (안 제22조, 제23조)

다.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7조, 제22조, 제28조,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2. 15. ~ 3. 6.)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이금재 (☎2133-7680)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와”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를 “시의”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시와 다른 시·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시 또는 국가기관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종사자,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을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민건강국장, 환경기획관”을 “시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를 “부서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맡는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생략) ③ 사업자는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의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u>시와</u> 자치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와 ----- ---.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실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u>서울특별시의</u> 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으로 한다)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⑨ (생략)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 ----- ----- ----- ----- <u>시의</u> ----- ----- ----- -----.
제12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시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제12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 ----- ----- -----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
우 시장은 다음 제1호부터 제5
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
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청원을 처리한다.

1.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
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
우

3.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1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중
합정보센터) ① 시장은 제24조
에서 정한 정보, 그 외의 환경유
해인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및 시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중
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

-----,

1. 시와 다른 시·도-----

2. 시 또는 국가기관이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중
합정보센터) ① ----- 제28조--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촉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

2. 당연직 위원 : 시민건강국장, 환경기획관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현행과 같음)

③ -----

1. -----

-----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

2. ----- 시 시민건강업
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④ (현행과 같음)

⑤ -----

----- 부
서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팀장
이 맡는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삭 제>

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③ (생략)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

①·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 -----

-----.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는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
한 경우

6. 삭제

제24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
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
다.

제28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
민에게 공개한다.

1. 2. (생략)

3. 제12조의 어린이 건강에 유
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보

4. ~ 8. (생략)

② (생략)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② (생략)

③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
질 관련 환경·안전교육 등을
위해 제25조제3항에서 정한 교
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
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

1.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

--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9조제3항-----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이금재 (02-2133-7680)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장 직무대행 단서 신설 (안 제24조)
- 나.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조문 구체화 (안 제32조)
- 다. 위원의 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안 제33조)
- 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 (안 제3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2. 1. ~ 2. 21.)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김현경 (☎2133-4731)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충분한”을 “충분하며 안전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되고”를 “말고”로, “된다”를 “말는다”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모두”를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로, “때는”을 “때에는”으로, “대리한다”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서면으로 통보”를 “통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분기”를 “분기별”로, “할”을 “개최할”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제33조 본문 중 “출석한 자에 대하여”를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5조 중 “2024년 9월 21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667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①·② (생략)	제2조(기본이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u>충분한</u>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③ ----- ----- <u>충분하며 안전한</u>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u>위촉직</u>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3조(구성) ① ----- ----- ----- ----- <u>위촉위원</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정책과장이 <u>되고</u> ,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u>된다</u> .	⑤ ----- --- <u>말고</u> ----- ----- <u>말는다</u> .
제24조(위원장 등) ① ~ ③ (생략)	제24조(위원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 <u>모두</u>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u>대리한다</u> .	④ ----- <u>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u> ----- ----- <u>때에는</u> ----- -- <u>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u>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략)

제28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로 하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통보 -----
-----, -----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은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분과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분기별 -----

----- 개최할 --.

제3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u>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4.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제33조(수당) 시장은 제26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수당) ----- ----- ----- ----- -----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운영세칙) ----- ----- <u>필요한</u> ----- -----.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u>2024년 9월 21일</u>까지로 한다.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 <u>2027년 9월 30일</u>-----.

서울특별시 먹거리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김현경 (02-2133-4731)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후생복지 제도 현행화 및 불분명한 용어·표현 재정비로 조례상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와 중복적인 시행규칙을 조례로 통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범위 현행화(안 제6조)

나.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범위 현행화(안 제6조)

다.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용어·표현 재정비(안 제7조 및 제9조)

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7조)

마.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를 조례에 신설·통합하여 위원회 조항 재정비(안 제9조~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2. 15. ~ 3. 6.)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행정국 인력개발과 오정은 (☎2133-577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휴양·안전후생”을 “보건·휴양·안전·후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선택적복지제도 설계·운영시”를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직중”을 “휴직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파견중”을 “파견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하 “위원회 “”를 “이하 “위원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에”를 “소속공무원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력 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원후생복지”를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휴게실·구내식당·매점”을 “휴게실·구내식당·매점·카페·자동판매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무실·치과진료실·체력단련실”을 “부속 의료기관·체력단련실·심리상담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의 확보 운영”을 “등”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청매점”을 “매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우수·효행공무원”을 “우수·효행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출산직원”을 “출산한 소속공무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중 “소속 공무원”을 각각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관리, 수리 등

나. 주택 임차보증금의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15.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제8조의 제목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 을”을 “운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6조에서”를 “제6조에”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에서”를 “제7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안건”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후생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후생복지제도"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u>보건·휴양·안전후생</u>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u>범위</u>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u>선택적복지제도 설계·운영시</u>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보건·휴양·안전·후생</u> ----- ----- --. 3. ----- <u>소속공무원</u> ----- -- <u>범위</u> ----- ----- -----. 4. ----- <u>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u> ----- -----.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u>시장</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 -----. 1. -----

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생략)

4. 시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생략)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 휴직 중-----

2. ---- 파견 중-----

3. (현행과 같음)

4. -----
-----이
하 "위원회"-----

③ -----

----- 소속공무원
에 -----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노
력하여야 ---.

③ ---- 소속공무원 후생복지-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 예산의 범위-----

-----.

1. ----- 휴
게실·구내식당·매점·카페·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치과진료실·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
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5. 6. (생략)
7.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동판매기

2. -----
----- 부속 의료기관·체력단련실·심리상담센터
3. -----

----- 등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소속공무원

--- 매점-----
-----,

1. 우수·효행 소속공무원-----

2. ----- 소속공무원 -

3. 소속공무원 -----

4. 소속공무원-----

5. 6. (현행과 같음)
7. 소속공무원-----

가. 직원 후생복지용 아파트
의 임대 및 관리

나. 주택 전세금의 융자

8.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상품권 제공 및 2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등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
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
램 운영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
리프로그램 운영

12. 소속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
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13.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
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
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

14.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신 설>

가.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
대, 관리, 수리 등

나. 주택 임차보증금의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8. -----
소속공무원-----

9. 소속공무원-----

--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

10. 소속공무원-----

11. 소속공무원-----

12. 소속공무원 -----

13. 소속공무원-----

14. 소속공무원 -----

--

15.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제6조에서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

종 지원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운영을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

3. 제7조에 -----

4. -----

사항

<삭 제>

<삭 제>

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
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법령
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
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
장”이라 한다)은 후생업무를 주
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
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

<신 설>

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
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
회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
례」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
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와 제9조
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
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신 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

<u>제9조</u> (생 략) <u>제10조</u>(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u>후생복지사업의 대행</u>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u>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u>」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제12조</u> (현행 제9조와 같음) <u>제13조</u>(운영의 위탁 등) ① ----- ----- ----- ----- ----- ----- ----- <u>후생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u> ---. ②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표현·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임

4. 작성자

행정국 인력개발과 오정은, 02-2133-5771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금고 지정·운영 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회피 규정 및 금고지정 절차 관련 공정성 미비 조항을 개정하여 금고 지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이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함(안 제10조)

나. 금융기관에 대한 금고지정 관련 통지를 의무적 절차로 변경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2. 15. ~ 3. 6.)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재무국 재무과 안수현 (☎2133-322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그의” 를 “그가” 로, “보관에 속하는” 을 “보관하는” 으로, “형식을 빌어” 를 “형식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영기업” 을 “직영기업이나”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을 “제1호의 금고를” 로 한다.

제3조 중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으로, “지방공기업법” 을 “「지방공기업법」”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금고의 약정기간)” 을 “(금고약정 기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고의 약정기간은” 을 “금고약정 기간은” 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금고의 지정방법)” 을 “(금고지정 방법)”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 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 으로, “위촉하되” 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위촉된” 을 “임명 또는 위촉된”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 를 “하나의 사안을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를 “본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기피” 로, “경우에는” 을 “경우” 로,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를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을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맡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제12조제1항 중 “금고 참여의사” 를 “금고지정에 참여의사” 로,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를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로 한다.

제13조 중 “금융기관에서”를 “금융기관이”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을 “정부기관 (금융감독원 등) 또는”으로, “자료와”를 “자료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기준과”로, “작성,”을 “작성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보”를 “서울시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를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
1. "금고"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u>그의</u> 소유 또는 <u>보관에 속하는</u>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u>형식을 빌어</u>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 ----- -- <u>그가</u> ----- <u>보관하는</u> ----- ----- ----- ----- <u>형식으로</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특별회계"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u>직영기업</u>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 ----- ----- <u>직영기업이나</u> ----- -----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금고지정"이란 <u>금융기관 중</u>	5. ----- <u>제1호의 금고</u>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생 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

를 -----
-----.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지방공기업법」-----

-----.

제5조(금고약정 기간) 금고약정기간은 -----

-----.

제6조(금고지정 방법)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삭 제>

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
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
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
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
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

<신설>

②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③ ----- 임명 또는 위
촉된 -----
--.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
----- 하나의
사안을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본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기피 ----- 경우 ----
----- 심의·평가에
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
하는 과장이 말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
다.

③ -----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
-----.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보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금고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

---- 금고지정에 참여의사----

-----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 금융기관이 -----
----- 정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또는 -----
자료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기준
과 -----
----- 작성하여 -----

-----.

제15조(금고약정) ① -----

----- 서울시보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

-----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여 금고 지정·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재무국 재무과 안수현(02-2133-3228)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소액채납액 가산세 면제기준 상향에 맞추어 일반우편 송달금액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채납액 범위를 기존 ‘가산금’ 제외에서 ‘가산세’ 제외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4호)
- 나.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합 의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2. 8. ~ 2024. 2. 28.)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 조문대비표: 별도 불임

※ 작성자: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 (☎2133-3355)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24호”를 “법 제2조제1항제23호”로, “가산금은”을 “가산세는”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4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로, “대리인의 선정”을 “대리인 지정”으로, “규칙”을 “시장에게 규칙”으로, “선정 신청서”를 “지정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청구인등”을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액체납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가산금이 포함된 부과 분의 경우 가산금을 가산세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생략)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u>법 제2조제1항제24호</u> 에 따른 <u>가산금은</u> 제외한다)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u>)	4. ----- ----- ----- --- <u>법 제2조제1항제23호</u> --- -- <u>가산세는</u> ----- ----- ----- <u>이하</u> ----- ----- ----- -----.
<u><단서 신설></u>	<u>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u>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 --- <u>법 제10조</u> -----

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여 교부한다.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 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 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45만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 과세전적 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 ----- 대리인 지정----- 시장에게 규칙-----
- 지정 신청서-----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
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
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12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
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 략)

③ -----
---- 이의신청인등-----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
----- 서울특별
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지방세기본법 상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관련 조문을 통합하는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도래에 따른 개정이므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2133-335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관광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업지역 용적률의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7항 단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2. 1. ~ 2. 21.)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송주한 (☎ 2133-832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7항 중 “범위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 (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⑯ (생략)	① ~ ⑯ (현행과 같음)
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역사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⑰ ----- ----- ----- ----- ----- ----- ----- ----- ----- ----- ----- 범위----- -----, 다만,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하는 제1항제7호부터 제 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 을 포함한다)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 다.
⑱ ~ ㉕ (생략)	⑱ ~ ㉕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자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송주한(02-2133-8327)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람료를 한시적으로 감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유효한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 감액(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 나.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경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3. 8. ~ 3. 28.)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최지현 (☎ 02-2133-524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 제4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생략)	제6조(관람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앞쪽)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제6조(관람료 감면) 제2항의 관람료 감면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를 추가하고자 함
- 이에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입감소가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감면기간 : 2024년 5월 22일(조례 공포·시행예정일)부터 3년까지
- 감면금액 : 인당 750원 ※ 관람료 평균 1,500원의 50% 적용

구 분	금 액		비 고
	개인	단체(20명 이상)	
어 른	2,000원	1,000원	20세~64세
청소년 및 어린이	1,000원	500원	7세~19세

- 감면비율 : 0.83%

$$- 0.83\% = 24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관람료 예상감면인원(13,572명) / \text{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수}(1,628,332명) \times 100$$

- 감면인원 : 연 8,300명

$$- 8,300명 = \text{기후동행카드 소지자 } 50\text{만명} \times 0.83\% \times \text{과학관 } 2\text{개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수입	감면입장료	4,150	6,225	6,225	2,594	19,194
	소계(b)	4,150	6,225	6,225	2,594	19,194

(앞쪽)

4.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국비		-	-	-	-	-
시비	지방세수입	-	-	-	-	-
	세외수입	-	-	-	-	-
	지방채 등	-	-	-	-	-
민간		-	-	-	-	-
기타		-	-	-	-	-
합계		-	-	-	-	-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최지현(02-2133-524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 ; 4,150천원 = 8,300명 × 8개월/12개월 × 750원
- 2차년도 : 6,225천원 = 8,300명 × 750원
- 3차년도 : 6,225천원 = 8,300명 × 750원
- 4차년도 : 2,594천원 = 8,300명 × 5개월/12개월 × 750원

※ 조례 시행시기 고려하여 1차연도는 8개월치, 4차연도는 5개월치 산정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할인 대상에 추가하여 시 주요사업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3. 8. ~ 3. 28.)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익승 (☎2133-423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전시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 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을 “기획전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 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
2.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 ④ 제3항에 따른 할인관람료는 관람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의 제목 “(무료관람)” 을 “(무료 관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다둥이” 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로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경우에도” 를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단서 중 “허가” 를 “대관허가”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주의 의무” 를 “주의의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인 없이” 을 “승인없이”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원상 복구” 를 “원상복구” 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대여허가조건” 을 “대여허가 조건” 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상호 간” 을 “상호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상” 을 “이상의”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대관 허가” 를 “대관허가” 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때” 를 “때에” 로 한다.

제31조제3항 단서 중 “3분의2이상의” 을 “3분의2 이상의” 으로 한다.

제32조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해당업무” 를 “해당 업무”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위탁 할” 을 “민간위탁할”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관람료) ①·② (생략)	제8조(관람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u>기획전시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 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하여는</u> 관람료를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 --- <u>기획전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u> ----- ----- ----- ----- ----- -----.
<신 설>	1. <u>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u>
<신 설>	2. <u>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u>
<신 설>	④ <u>제3항에 따른 할인관람료는 관람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u>
⑥ (생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9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	제9조(무료 관람) ① ----- -----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

5. ~ 11. (생략)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3. ~ 18. (생략)

② (생략)

제11조(대관허가) 시장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별위내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대관허가 신청) 전시실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미술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하려는 자의 주소 및 성

-----.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 11. (현행과 같음)

1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13. ~ 1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대관허가) -----
----- 별위-----

-----.

제13조(대관허가 신청) -----

-----.

1. -----

명(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
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 5. (생 략)

제16조(대관료) ① ~ ④ (생 략)

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를 받
는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하
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
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관허
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
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생 략)

② 대관자는 제19조제1항의 관
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 경우에는 -----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대관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대관허가---

-----.

제1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

----- 주의의무-----

② -----

----- 승인없이

제2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미술관자료 구입) ① 시장
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
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되 미술관자료추천회
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제27
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25조(미술관자료 열람 등) ① ·
② (생략)
③ 미술관자료의 대여허가조건,
유료·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미술관자료기증) ① ~ ③
(생략)

④ 미술관자료기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중복 위
촉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⑥ (생략)

⑦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
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

제22조(미술관자료 구입) ① ----

----- 범위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미술관자료 열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대여허가 조건

-----.

제26조(미술관자료기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상호간 -----
-----.

⑤ -----
---- 이상의 -----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범위-----

기증미술관자료 평가액의 20% 한도 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증미술관자료의 평가액은 미술관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2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2. (생략)
3. 대관허가 심의에 관한 사항
4. 5. (생략)

제3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 ③ (생략)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회 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작품구입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

제29조(위원회 기능) -----

--.

1. 2. (현행과 같음)
3. 대관허가-----
4. 5. (현행과 같음)

제3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때에 -----.

제31조(위원회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3분
의2 이상의-----.

제32조(위원수당) -----
----- 범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5조(자체규정의 제정 및 민간 위탁) ① (생 략)	제35조(자체규정의 제정 및 민간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장은 미술관 업무 중 공공 서비스의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해당업</u> 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u>해당 업</u> 무-----.
③ 미술관의 업무를 <u>민간위탁</u> 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③ ----- <u>민간위탁할</u> ----- ----- ----- -----

(앞쪽)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제8조(관람료) 제3항제2호에 관람료 감면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를 추가하고자 함
- 이에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입감소가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감면기간 : 2024년 5월 22일(조례 공포·시행예정일) 이후 발생
- 감면비율 : 14% 적용(다둥이 행복카드와 동일비율 적용)

(에드워드 호퍼 입장료)

대 상	입장료
일 반	17,000원
청 소 년	15,000원
어 린 이	12,000원
다둥이 행복카드	입장료의 2,000원 할인

- 예상 할인 입장비율 : 10% [기후동행카드 이용자(50만)/전체일평균대중교통이용자 (500만)]
- 연간 평균 유료입장 수입 : 315,017천원
 - (유료전시3회 수익) ÷ 6년('19~'24년)으로 계산(유료전시 2년당 1회 개최, 24년 미개최 예정)

(단위 : 천원, 명)

구분(전시명)	전체 입장객수	입장료 수익
합계	807,529	1,890,107
'19년 데이비드호크니	375,350	697,068
'21년 빛: 테이트 특별전	101,053	489,897
'23년 에드워드 호퍼	331,126	703,142

○ 비용추계 산식

- 1차년도 : 연평균 입장료 수익(315,017천원) × 0.1(기후동행카드할인자 비율 10%) × 0.14(감면비율 14%) × 222일/365일 = 2,682천원
- 2차년도 : 연평균 입장료 수익(315,017천원) × 0.1(기후동행카드할인자 비율 10%) × 0.14(감면비율 14%) = 4,41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수입	감면입장료	2,682	4,410	4,410	4,410	4,410	20,323
	소계(b)	2,682	4,410	4,410	4,410	4,410	20,323

4.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	-	-	-	-	-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익승(02-2133-423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서울대공원 및 서울식물원 입장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에 한한다)’를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3. 8. ~ 3. 28.)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노병현(☎ 2133-201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 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14.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 ----- -----. 1. ~ 14. (현행과 같음) <u>15.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에 한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요금의 감면) 제1항에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 대하여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의 입장료를 면제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행기간 : 비용은 조례 공포·시행예정인 2024년 5월 22일 이후 발생
- 면제시설 및 면제금액
- 서울대공원 및 서울식물원 입장료 전액 면제

대 상 시 설	입장료
서울대공원	동 물 원 : 5,000원(성인기준) 테마가든 : 2,000원(성인기준)
서울식물원	5,000원 (성인기준)

- 예상 무료 입장비율 : 10% [기후동행카드 이용자(50만)/전체일평균대중교통이용자 (500만)]
- 연간 평균 유료입장수입 : 7,018,958천원 (코로나 이슈로 휴원일이 있는 2021년 이전 제외)
(단위 : 천원, 명)

구분	유료입장객수 (2022~2023평균)	입장료 수익 (2022~2023 평균)
합계	1,628,816	7,018,958
서울대공원	1,162,267	4,890,157
서울식물원	466,549	2,128,801

○ 비용추계 산식

- 1차연도 : 최근 2년간 평균 유료입장료 수익(7,018,958천원) × 0.1(기후동행카드면제자 비율 10%) × 222일/365일 = 426,906천원
- 2차연도 이후 : 최근 2년간 평균 유료입장료 수익(7,018,958천원) × 0.1(기후동행카드면제자 비율 10%) = 701,895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면제입장료	426,906	701,895	701,895	701,895	701,895	3,234,486
수입	소계(b)	426,906	701,895	701,895	701,895	701,895	3,234,486

4.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	-	-	-	-	-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노병현 (2133-2017)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임

- 취득 2건은 매입 1건과 신축 1건임
- 처분 1건은 매각 1건임

나. 취득 2건

- 매입 1건에 대한 세부내역

한강의 대형 수난사고 및 다양한 양상의 재난에 대한 선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수난 인명 구조·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압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노후 소방선박을 50톤급 다목적 선박으로 교체하여 항해 안전성을 확보

- 신축 1건에 대한 세부내역

대중교통 전반의 품질을 제고하고 수상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의도 등 7곳에 리버버스 선착장을 설치하고자 2024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접근성 향상 등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일부 선착장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다. 처분 1건

- 매각 1건에 대한 세부내역

양천구민의 행정수요 충족을 지원하고자 노후한 목1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양천구에서 매입을 요청한 市 소유의 목동 재활용센터 이전 부지(목동 408-78)를 매각(1,503.00㎡)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2건
 - 매입 1건 : 50톤급 선박

- 신축 1건 : 공작물 4,360.00㎡
- 처분 1건
 - 매각 1건 : 토지 1,503.00㎡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강의 대형 수난사고 및 다양한 양상의 재난에 대한 선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수난 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압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노후 소방선박을 50톤급 다목적 선박으로 교체하여 항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전반의 품질을 제고하고 수상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의도 등 7곳에 리버버스 선착장을 설치하고자 2024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접근성 향상 등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일부 선착장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양천구민의 행정수요 충족을 지원하고자 노후한 목1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양천구에서 매입을 요청한 市 소유의 목동 재활용센터 이전 부지(목동 408-78)를 매각(1,503.00㎡)하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2건

- 매입 1건 : 50톤급 선박
- 신축 1건 : 공작물 4,360.00㎡

○ 처분 1건

- 매각 1건 : 토지 1,503.00㎡

첨 부

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이 전			금 회			합 계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취득	계	토지	1	25,386.21	33,997,565	-	-	1	25,386.21	33,997,565
		건물 등	15	85,637.38	373,750,541	1	4,360.00	16	89,997.38	394,950,541
		기타	1	-	30,000,000	1	-	2	-	38,000,000
	매입 및 신축	토지	-	1,047.40	3,010,075	-	-	-	1,047.40	3,010,075
		건물	2	37,654.52	124,156,632	-	-	2	37,654.52	124,156,632
		토지	-	-	-	-	-	-	-	-
	매입	건물	-	-	-	-	-	-	-	-
		기타	1	-	30,000,000	1	-	1	-	38,000,000
		건물 등	10	43,101.94	226,860,873	1	4,360.00	11	47,461.94	248,060,873
	증축	건물	3	4,880.92	22,733,036	-	-	3	4,880.92	22,733,036
처분	교환	토지	1	24,338.81	30,987,490	-	-	1	24,338.81	30,987,490
		건물	-	-	-	-	-	-	-	-
		토지	2	8,061.90	89,481,365	1	1,503.00	3	9,564.90	104,037,920
	계	건물	2	41,136.33	12,548,156	-	-	2	41,136.33	12,548,156
		토지	-	3,167.70	25,680,477	-	-	-	3,167.70	25,680,477
		건물	1	23,665.47	6,756,691	-	-	1	23,665.47	6,756,691
	매각	토지	2	4,894.20	63,800,888	1	1,503.00	3	6,397.20	78,357,443
		건물	-	1,715.51	804,574	-	-	-	1,715.51	804,574
		건물	1	15,755.35	4,986,891	-	-	1	15,755.35	4,986,891
	멸실	건물	1	15,755.35	4,986,891	-	-	1	15,755.35	4,986,891

2.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24년도 제1차 수시분)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구	동	번지					
계									
					4,360.00	29,200,000			
1	선박 매입	-	-	-	50톤급	8,000,000	2026	노후 소방선박(서울702호) 교체	119특수구조단 (재난대응과)
2	공작물 설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4,360.00	21,200,000	2024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한강이용증진과

3.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24년도 제1차 수시분)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처분 시기	처분사유	소관부서
		구	동	번지					
계									
					1,503.00	14,556,555			
1	토지 매각	양천구	목동	408-78	1,503.00	14,556,555	2024	양천구 목1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각	공원이용정책과

4.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요약(' 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업명	구분	내역			세부내용
		종류	건수	(연)면적(㎡)	
노후 소방선박 (서울702호) 교체	취득 (매입)	선박	1	50톤급	- 목적 및 용도 : 내용연수 경과 노후 소방선박을 각종 수난사고 대응을 위한 다목적 소방선박으로 교체 - 사업기간 : ' 24.02월 ~ ' 26.12월 - 소요예산 : 8,000,000천원 ※ 시비 50%, 국비(소방안전교부세) 50% - 사업규모 : 50톤급 소방정 매입 - 기준가격 명세 : 8,000,000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취득 변경 (신축)	공작물	1	4,360.00	- 목적 및 용도 : 한강 수상이용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교통 기반시설인 선착장 조성 - 대상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외 6개소 - 사업기간 : ' 23.05월 ~ ' 24.09월 - 소요예산 : 21,200,000천원 - 사업규모 : 4,360.00㎡ - 기준가격 명세 : 21,200,000천원 - 계약방법 : <공작물 설치> 일반입찰
양천구 목1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각	처분 (매각)	토지	1	1,503.00	- 목적 및 용도 : 목1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활용을 위한 자치구(양천구) 매각 - 대상지 : 양천구 목동 408-78 - 사업기간 : ' 23.11월 ~ ' 24.06월 - 소요예산 : 없음 - 사업규모 : 1,503.00㎡ - 기준가격 명세 : 14,556,555천원 - 계약방법 : <토지매각> 수의계약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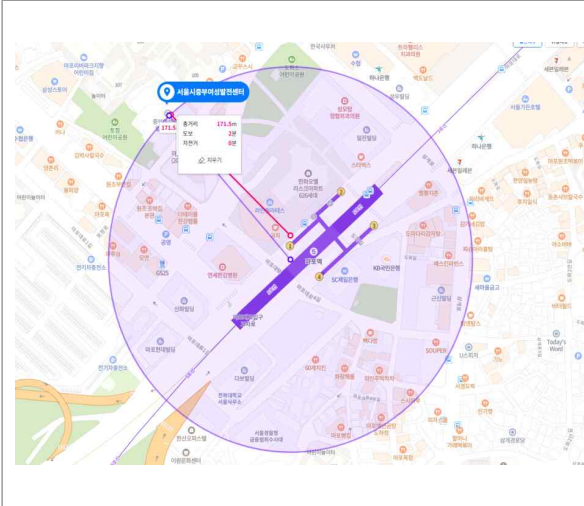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나.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 다. 위탁기간 : 3년(2024. 10. 15. ~ 2027. 10. 14.)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취·창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마. 위탁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5길 17(용강동)
 - 규 모 : 대지 2,172㎡, 연면적 3,871㎡(지상 4층 ~ 지하 1층)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미용, 의상 피부관리 등), 세미나실, 강당, 상담실 등
- 인력현황 : 11명
 - 센터장 1명, 관리팀 3명, 교육팀 4명, 취·창업팀 3명
- 위치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금1,107백만원(2024년 예산)

- 인건비 579백만원, 운영비 365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113백만원, 특화교육 프로그램 50백만원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권고)

- 2024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024. 3.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는 별도평가(여성능력개발원 주관)로 대체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작성자 :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일자리팀 안다연(☎ 2133-5022)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서울시 기술교육원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나.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4개 기술교육원을 하나의 수탁 법인에 의해 통합 운영하여, 산업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기술교육원 중부·남부·동부·북부 통합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 市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개선 계획(시장방침 제3호, 2024.1.30.)

○ 필요성

-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교육과정 설계 - 교육생 모집 - 직업 교육 실시 - 취업연계’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수행하여 직업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울시 기술교육원 직업교육훈련사업, 취업촉진 지원 사업 등
- 교육원 시설 및 장비의 관리, 기타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전체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남부기술교육원 분산배치 계획 수립 및 이전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구 분		중 부	남 부	동 부	북 부
소재지		용산구 한남동	경기도 군포시	강동구 고덕동	노원구 상계동
규모	대지	5,521㎡	58,523㎡	23,153㎡	10,486㎡
	면적	6,919㎡	24,554㎡	12,704㎡	12,854㎡
지원시설		3개동	13개동	5개동	4개동

마. 민간위탁기간 : ' 25. 3. 1. ~ ' 28. 2. 29.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회 심사·선정

사. 소요예산(안) : 연간 20,186백만원 (' 24년 예산 기준)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권고)

－ 사무 통합 후 조직, 인력 및 예산운영 효율화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조근희 (☎ 2133-5463)

남산 곤돌라 관리·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 26년 3월경 부터 운행 예정인 남산 곤돌라의 관리·운영을 공공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연접·연계시설인 예장공원 주차장을 기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 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남산 곤돌라
- 위 치 : 예장공원(중구 예장동 11) ~ 남산 정상부
- 관리범위 : 상·하부승강장, 노선(804m), 캐빈 25개

나. 대행사무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 한국영)
- 대행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 ※위탁계약 예정
- 대행업무 : 곤돌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 시설물의 일상적 유지·관리 및 운영
 - 시설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이용 활성화
 - 재난·재해 대응계획 마련 및 일상적 안전대책

다. 대행사업 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공공성 확보
 - 남산 곤돌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서, 운영의 공공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관리·운영 필요

※남산 곤돌라 설치 목적

- 남산 내 관광버스 진입제한(‘21.08. 시행)에 따른 시민·관광객의 이용불편 해소
- 곤돌라 운영수익을 기금화하여 남산의 생태회복사업에 환원

- 대행사업은 공단에 대한 市의 직접적인 통제(예산심의, 감사 등)가 가능함에 따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성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

○ 전문성 확보

- 서울시설공단은 다양한 종류의 인프라를 인수·관리하는 등 시설물 관리 전문기관으로,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 가능

※서울시설공단 관리 시설물

· 서남권돔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청계천, 어린이대공원, 서울추모공원, 도시고속도로(12개노선, 158.64km) 및 도로부속시설, 공영주차장 등

○ 효율성 확보

- 서울시설공단은 곤돌라 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연계되는 예장공원 공영버스주차장 관리·운영('21년~)기관으로, 곤돌라 시설과 통합 유지·관리를 통하여 효율성 극대화

라. 추진계획

○ '24. 06. 위·수탁 계약체결

○ '24. 07. ~ '24. 11.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 실시설계

※설계단계부터 운영주체 의견수렴하며 사업추진(공정회의 참석)

○ '24. 12. 공사 착공

○ '26. 03. 준공 및 운영개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김경욱 (☎ 2133-8498)

<참고>

남산 곤돌라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생태·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남산 조성

- 생태환경 회복 / 여가공간(곤돌라) 조성 / 공공성 강화

○ 위 치 : 남산~예장공원~명동 일대

○ 예산/기간 : 49,146백만원 / ' 22.11.~' 26.02.



□ 시설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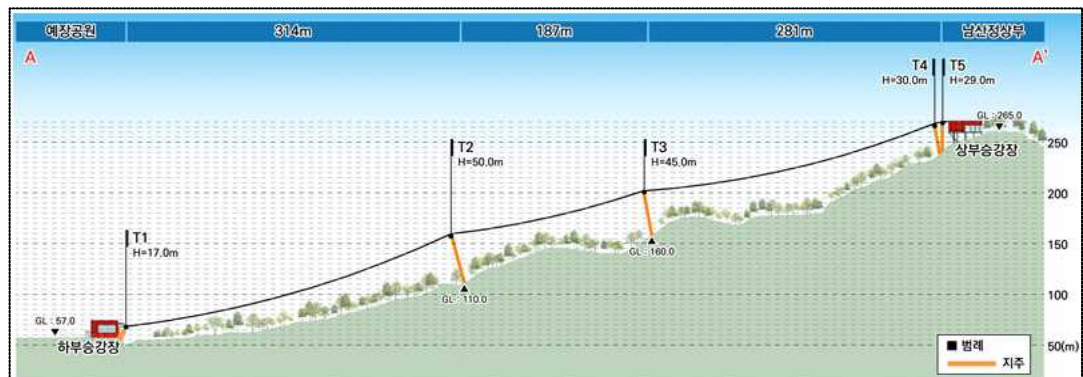
○ 승강장

구분	상부승강장	하부승강장
건축면적	599㎡	861.35㎡
연면적	599㎡	1,515.3㎡
층수/높이	지상1층/10m	지하1층·지상2층/17m

○ 궤도시설

- 케빈 : 10인승, 25대 / 지주 : 5개(가이드지주 포함)

- 연장 : 804m



서울특별시 공유재산(노들섬 다목적홀 숲)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노들섬 다목적홀(숲)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 발레단 전용공간으로 조성하여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노들섬 다목적홀 숲) 현황
- 주 소 : 용산구 양녕로 446(이촌동 302-6,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동측)
 - 규 모 : <토지> 1,906.38㎡ / <건물> 1,222.83㎡

층수	내용	면적(㎡)
계		1,222.83
지상1층	다목적홀, 세미나실, 화장실, 창고 등	1,024.87
지상2층(지붕층 포함)	공용공간, 기계실, 창고 등	197.96

- 재산관리관 : 문화정책과장

나. 공유재산 사용계획

- 사용자(수허가자)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허가기간 : '24. 5. 3. ~ '27. 5. 2.[3년]
- 공유재산 주요 사용계획(안) : 서울시 발레단 전용공간 조성·운영

위치	구분	면적(㎡)	주요 용도
지상1층	다목적홀 숲	573	연습실①, ②
	세미나실 A	110	사무실
	세미나실 B	83	재활운동실
	세미나실 C	67	탈의실, 샤워실

위치	구분	면적(㎡)	주요 용도
지상2층	공용공간 등	197	공용공간 등

- 허가조건 :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 허가방법 : 수의계약(「공유재산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市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출연기관이자, 비영리공공법인이며, ‘서울시 발레단 운영’은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해당
 - 市 출연기관 비영리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시 「공유재산법」 제24조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 가능
 - ※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3.21.)결과 : 조건부 적정(시의회 동의시)
- 다양한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
 - 문화공간이라는 상징성과 공간적으로 적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노들섬 다목적홀을 서울시 발레단 전용공간으로 조성·운영하여 노들섬 문화인프라(콘텐츠)와 연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
- 불필요한 세입·세출 상계 지양으로 행정·회계 효율성 제고
 - 재단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노들섬 다목적홀(숲) 사용료만큼의 市(문화본부)의 세출(출연금)과 세입도 함께 증액되는 구조로 사용료 부과에 따른 국세(부가가치세) 지출 부담 등 행정·회계의 비효율성 방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후 사용료 면제

※ 작성자 :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장정숙 (☎ 2133-2519)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역을 중심으로 철도시설 등으로 단절·침체 된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 특색을 고려한 산업경제, 보행환경, 역사문화 등 공동체가 공존하는 통합적 재생을 실현하고자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기 수립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일부 변경이 필요하여 절차를 추진 하는 것으로,
- 나.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함

2. 주요내용

- 가. 변경내용
- 사업기간: 기정)2015년~2020년 → 변경)2015년~2022년
 - 사업계획: 도시재생기반시설 1개소(중림동 문화거점시설) 사업계획 폐지(미실행)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수 및 면적 변경
 - 총사업비: 기정)599억원 → 변경)575.6억원
- 나. 변경사유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기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의견청취 사항

※ 작성자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최정훈(☎ 2133-8643)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산업 및 상권 활성화, 도시 환경 정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23.2.16.)한 사항과 관련하여,
- 나. 개방형녹지 확보 기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개방형녹지 개념 등 재정립을 통한 실효성 있는 녹지조성 유도
- 유연한 건축계획을 위한 개방형녹지 개념 확장
 - 저층부(5층 이하) 옥상녹화 개방형녹지 인정
 - 3천㎡미만 소규모 대지 개방형녹지 의무비율 완화
 - 대지구묘별 개방형녹지를 인정한도 설정을 통한 인센티브 적용
- 나. 허용·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및 높이 완화기준 조정
- 개방형녹지 허용인센티브 최대량 축소(100%→50%)
 - 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축소
 - 지역 필요시설 용도(문화인프라, 생활SOC) 허용인센티브 상향
 -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허용인센티브 항목 추가
 - 친환경분야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조정
 - 공개공지 초과조성 높이완화 삭제 및 공공시설 등 설치시 높이완화 추가

3. 추진경위

- '23.02.16.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 '24.01.~02. :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및 전문가 자문
- '24.04. : 주민공람(예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의견청취사항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최대규 (☎ 2133-4635)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가리봉동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사업에 대하여
-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3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 요청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개요

- 개 념 : 공공주도로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거 중심 지역 거점 조성 사업
(' 21.07.2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신설)
- 대 상 지 :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20만㎡ 이내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25% 범위 내에서 250억 한도로 5년간 국비 지원(매칭 비율 : 국비(40%), 지방비(60%))
 - ※ 지방비(60%) : 시·구 재정자립비율 기준으로 매칭 추진(서울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운영 기준)

나.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4-59 일대
- 면 적 : 12,504㎡
- 사업기간 : 2024.07.(지구지정) ~ 2031.03.(사업준공)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총사업비 : 3,332억(시행자 3,252억, 국비 32억, 시비 29억, 구비 19억)
 - ※ 국·시·구비는 생활SOC 등 공공지원시설 설치 비용임

○ 건축개요

지구면적	12,504㎡			
건폐율	50.02%	용적률	399.78%	
건립세대	구 분	유형	세대	비고
	분양	59㎡	279	
		74㎡	15	
		84㎡	52	
		계	346	
	임대	40㎡	183	
	총계		529	
근린생활시설	2,672㎡	생활SOC(주차장)	1,900㎡	

※ 건축개요는 향후 주민 공람, 관계부서 협의, 도시재생특위 과정에서 변경가능

3. 추진경위

- ' 21.02.04. :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국토부)
- ' 21.04.29. : 시범사업 후보지 발표(국토부, 가리봉 등 총 7곳)
- ' 23.09.13. : 주거재생혁신지구 운영 기준 수립(시)
- ' 23.10.11. : 혁신지구 지정 제안(LH → 시)
- ' 23.10.16. : 제321회 시의회 의견청취(안) 제출(시 → 시의회)
- ' 23.10.27. : 의견청취(안) 철회 요청(시 → 시의회)
 - 사 유 : 공람 시행자인 자치구(구로구)로부터 공람 공고 연기 통보(구로구 도시개발과-8714호, ' 23.10.25.)로, 향후 공람, 공청회 완료 후 의견청취 재시행 추진
- ' 23.10.31. : 의견청취(안) 철회 허가(시의회)
- ' 23.10.24. ~ ' 24.02.15. : 주민간담회(총 3회) 개최(시)
- ' 24.02.29. : 혁신지구 지정 보완 제안(LH → 시)
- ' 24.03.07. ~ 03.27. : 주민 공람(구)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 나. 예산조치 :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고시(' 24. 하반기) 이후 국·시·구비 분담 비율에 따라 별도 예산 책정 추진 필요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의견청취 사항

붙 임 : 위치도 및 조감도

※ 작성자 :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변원식(☎ 2133-7254)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현황사진



붙임 2

배치도 및 조감도(안)

□ 배치도(안)



□ 조감도(안)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